

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3.04.10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·관리·평가하고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대학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대학 성과관리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 성과관리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

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.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3.04.1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